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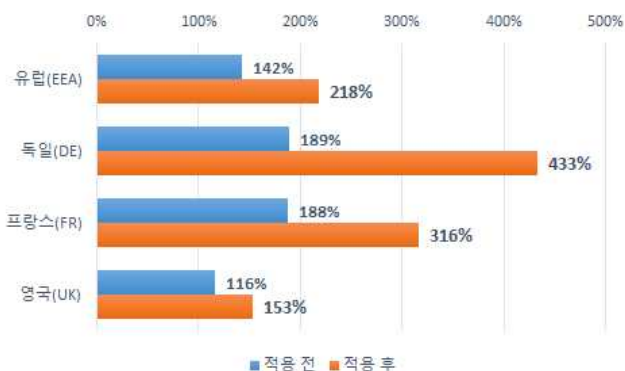
Solvency II 경과조치 개정논의와 시사점

노건엽 연구위원, 손민숙 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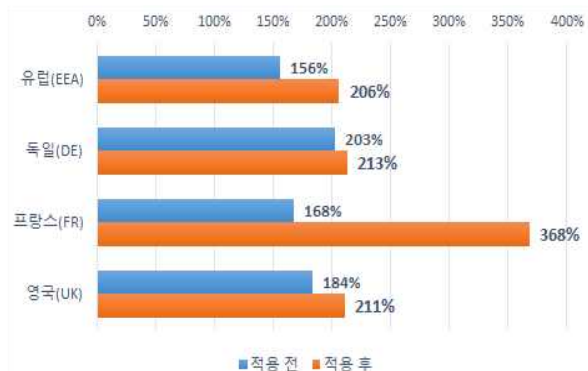
유럽보험연금감독청(EIOPA)은 Solvency II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경과조치 방안을 도입했음. 그런데 필요 이상의 경과조치 적용으로 다양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, 경과조치의 추가승인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됨. 이에 EIOPA는 공개협의를 통해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경과조치 추가승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.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(K-ICS)에서 경과조치 도입 시 승인의 일관성을 중시하고, 공시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- 유럽보험연금감독청(EIOPA)은 Solvency II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경과조치 방안을 도입하였는데, 각국 감독기관 승인 후 적용가능한 경과조치에는 책임준비금 혹은 할인율 방식이 있으며 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음
 - 책임준비금 경과조치는 Solvency II 도입 전후의 책임준비금 금액 차이를 적용기간(16년)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임
 - 할인율 경과조치는 Solvency I 기준 할인율과 Solvency II 도입 후의 무위험수익률 차이를 적용기간(16년)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임
- 한편, Solvency II 지침은 계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조건의 관점에서 경과조치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
 - 또한,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경과조치를 새로 신청할 가능성도 평가해야함
- 2017년 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유럽 보험회사는 168개사로, 이중 139개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자본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를 신청하였음
 - 책임준비금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시 SCR 비율은 평균 76%p(142%→218%), 할인율 경과조치 적용 시 SCR 비율은 평균 50%p(156%→206%)가 상승함
 - 경과조치를 적용한 회사 중 53개사는 경과조치가 없어도 SCR 비율 200%를 초과함

〈그림 1〉 책임준비금 경과조치 적용 전후 비교



〈그림 2〉 할인율 경과조치 적용 전후 비교



자료: EIOPA, "Report on long-term guarantees measures and measures on equity risk 2018"

■ 자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경과조치를 신청하는 이유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

- 경과조치 적용 시 좀 더 안정적인 투자정책이 가능함
- 경과조치가 없다면 이자율 변화에 따라 SCR 비율이 민감하게 반응함
- 경과조치는 보험회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대한 예방조치로 활용될 수 있음

■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경과조치 적용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음

- 책임준비금이 Solvency II 원칙에 따라 평가되지 않으므로 이전가치가 낮아 계약 이전(Run-off) 시 부채가 충분하지 않음
 - 즉, 보험회사의 실제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음
- 왜곡된 지급여력은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손상할 수 있음
- 경과조치를 적용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됨

■ 또한, 경과조치의 추가승인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됨

- 유럽의 8개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추가승인을 허용하였으나, 4개국은 허용하지 않는 등 추가승인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못함
 - 또한 대부분 감독기관은 2032년보다 조기에 경과조치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, 일부 감독기관은 경과조치 종료 후 재신청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함

■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 EIOPA는 공개협약¹⁾을 통해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경과조치 추가승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

- 공시는 경과조치 적용 이유, 경과조치 적용 시 지급여력 영향, 적용기간 종료 시 경과조치에 대한 의존성 감소 전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함
 - 경과조치가 없어 SCR 비율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되며, 경과조치가 없어도 SCR 비율을 만족하는 경우는 다른 이유가 존재해야함
- 한편 경과조치 추가승인은 보험회사의 규모가 최소 기준²⁾을 초과하여 새로이 Solvency II를 적용받거나,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대상 포트폴리오를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한 경우로 한함

■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(K-ICS)에서 경과조치 도입 시 승인의 일관성을 중시하고, 공시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- 경과조치를 도입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시장 경쟁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승인의 일관성이 중요함
- 또한, 경과조치를 도입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고위험 자산 투자 및 고위험 상품 판매 유인이 존재하므로 공시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**kiri**

1) EIOPA(2019. 10. 15), “Consultation Paper on the Opinion on the 2020 review of Solvency II”

2) 보험회사의 연간 총 수입보험료가 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준비금과 재보험 및 SPV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이 2,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Solvency II를 적용하지 않음